

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
(의안번호 제87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5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1. 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11. 11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사유

궁도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

○ 목 적

- 충무공 전승지에 충무공 정신을 이어받은 궁도장 건립으로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역사의 산교육장 활용 및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레저스 포트 명소로 부각코자 함

○ 필요성

- 전국의 충무공 전승지에는 궁도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항포관광지에는 궁도장이 없어 우리군의 궁도인과 군민들 사이에 궁도장 건립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.
- 지역민에게 궁도의 기회 제공 및 궁도인의 훈련장소 제공

○ 기대효과

- 관광과 역사교육의 배움의 장을 연계한 천혜의 관광명소 개발
- 민족의 역사성 고취 및 자라나는 새싹에게 역사교육 기회 부여

3. 주요골자

궁도장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

- 위 치 : 회화면 당항리 산32-3번지의외 12필지
- 면 적 : 5,361㎡(1,621평)
- 재산가액 : 47,661천원(공시지가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궁도장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으로 회화면 당항리 산32-2번지의외 12필지 5,361㎡(1,621평)의 토지를 매입하여 충무공 전승지에 궁도장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올바른 역사교육 및 당항포관광지와 연계된 레저스포츠 관광명소 개발로 고성 스포츠의 위상과 주민들에게 궁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
- 고성종합운동장 옆에 위치한 기존 궁도장(철성정) 이외 추가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, 시설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궁도장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대상 중 지적도상 당항리 117-6, 117-7, 117-8, 124-2번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해야하지 않는지?
- 답 :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료 지적도상의 117-6번지의외 3필지는 4차선 도로 확장 부지입니다.
- 문 : 궁도장건립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얼을 잘 새겨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?
- 답 : 예, 잘 알겠습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4. 11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